제285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	의안 번호	제387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 387 호

○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○ 제 출 일 : 2021. 10. 5.

○ 회 부 일 : 2021. 10. 8.

2. 제안이유

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, 반려동물보호, 한국형 뉴딜정책, 부동산 정책 및 지적재조사, 미세먼지 저감, 감염병 대응 등 국가 정책과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공원녹지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6급 이하의 인력 확충을 위한 「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 개정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근거규정 정비(**안 제1조**)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[1)]

---

1) **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나.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**(안 제2조)**

○ 지방공무원의 총수 : 1,515명 → 1,567명 (+52명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85명 → 1,537명

나. 정원관리 기관별・직급별 정원 변경**(안 제4조 관련 별표3)**

○ 정원 총계 : 1,515명 → 1,567명 (+52명)

○ 일반직 계 : 1,504명 → 1,556명 (+52명)

- 6급 이하 : 1,425명 → 1.477명 (+52명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기준인건비 범위 내

다. 입법예고 : 2021. 8. 26. ~ 2021. 9. 2.

○ 의견제출 (지적과) : 시설직(지적) 1명 확충

국가위임사무인 부동산정책 관련 업무의 비중 확대 및 신규업무 발생(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, 토지거래계약 허가, 부동산중개업, 도로명주소 업무), 지적재조사업무 비중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

라. 비용추계 : 붙임 참조

마. 비용추계에 따른 인력 충원 현황

총계	행정직	사 회 복지직	기 술 직						
			소계	기계	녹지	보건	환경	지적	간호
52명	23	21	8	1	1	1	1	1	3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주요시책과 구정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6급 이하의 직원 5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건이 제출되었음.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[2](직급별 정원) 및 제30조(정원의 규정)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. 다만, 시·군·구의 경우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같은 규정 제22조제2항[3]에 따라

2) 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3) 제22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4. 10.>

1. 시·도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처, 합의제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경제자유구역청
2. 시·군·구의 경우 : 본청, 의회사무국·사무과, 합의제행정기관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자치구가 아닌 구, 읍·면·동과 그 출장소

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증원되는 6급 이하의 직원 52명의 각 부서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.

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88명 증원 이후 가장 많은 실무직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으로서 출산 등 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그동안 늘어난 업무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부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수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서별·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.

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「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